

---

# 2020년도 공통적용 손실보상액 단가결정 [영농손실액 · 주거이전비]

---

2020. 6.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I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 **감정평가기관 평가·산정**

- 토지·물건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

\* 토지 및 건축물 등 물건, 어업권 등 권리, 농업손실을 제외한 영업보상

□ **사업시행자 직접산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통적용 단가의 산출이 가능한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금액을 직접산정**

\* 이사비 등 4종 보상액은 통계청 등 관계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

**< 직접산정 손실보상 종류 및 산정 방법 >**

보상대상	산정 방법	비고
영농손실액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b>농가경제조사통계</b> 를 기준으로 산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금회산정
주거이전비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b>가계조사통계</b> 의 산출단가를 기준으로 산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이사비	통계청 및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하는 <b>보통인부임 및 차량운임을 주택건평 기준에 적용하여 산정</b>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20.4월 산정
분묘보상액	전북 및 광주전남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제출한 '20 분묘이전비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20.3월 산정

- **분묘보상액, 이사비는 기산정('20.3·4월)하였으며, 영농손실액과 주거이전비는 통계자료가 발표됨에 따라 금회 산정**

## II

## 영농손실 보상액

### □ 근거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따라 영농손실액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통계청 발표자료 기준으로 직접 산정

### □ 보상기준 및 지급액

- (보상기준)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m<sup>2</sup>당)의 직전 3년간 평균 × 2년분
- (보상금) 전북 m<sup>2</sup>당 3,310원, 전남(광주) m<sup>2</sup>당 2,920원

- 직전 3년간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

(단위 : 원/m<sup>2</sup>)

구 분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			2020년도 농업손실보상액 [(A+B+C)/3×2]	비 고
	2017(A)	2018(B)	2019(C)		
전북	1,463	1,897	1,608	3,310	
전남(광주)	1,374	1,593	1,423	2,920	

\* 2019년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

(단위 : 원/m<sup>2</sup>)

구 분	농작물총수입 (A)	표본농가 경지면적(B)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C=A÷B)	비 고
전북	27,882,541	17,345	1,608	
전남(광주)	21,242,795	14,928	1,423	

※ <연도별 영농보상금 변경 추이>

(단위 : 원/m<sup>2</sup>)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전년대비
전북	2,935	2,870	3,170	3,310	증 140원(4.4%)
전남(광주)	2,677	2,670	2,840	2,920	증 80원(2.8%)

### Ⅲ 주거이전비

#### □ 근거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 □ 보상 기준 및 지급액

- (보상기준)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 소유자는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 보상

- 1인~ 5인 : 통계청 발표 가계조사통계 자료 적용

- 6인 이상 :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  
+ (5인 초과 가구원수 × 1인당 평균비용\*)

\* 1인당 평균비용 = (5인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 (5,374,030 - 3,228,893) ÷ 3 = 715,045

#### ○ 가구원수별 지급액

(단위 : 원)

가구원수	2019년도		2020년도		
	소유자 (2월분)	세입자 (4월분)	가계지출비*	소유자 (2월분)	세입자 (4월분)
1인	4,373,330	8,746,660	2,382,796	4,765,590	9,531,180
2인	6,723,530	13,447,060	3,228,893	6,457,780	12,915,570
3인	8,855,260	17,710,530	4,347,784	8,695,560	17,391,130
4인	10,479,960	20,959,930	5,415,483	10,830,960	21,661,930
5인	11,062,550	22,125,100	5,374,030	10,748,060	21,496,120
6인	12,508,890	25,017,780	6,089,075	12,178,150	24,356,300
7인	13,955,230	27,910,460	6,804,120	13,608,240	27,216,480

\* 2019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IV

## 적용 기준

- (적용대상)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하천 등 모든 공익사업의 보상업무에 적용
  
- (적용시기) 2020년도 보상단가 결정일로부터 2021년도 보상단가 결정시 까지

\* 본 단가결정 이전 산정 시에 누락된 경우의 보상금 산정은 2020년 보상기준 적용